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108호 2019. 4. 10.(수)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19-33호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19-324호 통행제한공고 2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5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8호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35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고시 제2019 - 33호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강복건설에서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사 업 명 : 대지조성사업(주택단지조성)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강복건설 대표 서동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7 A동 2108호
3. 사업위치 :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75-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당 초	변 경	
사업주체	㈜한남산업개발 대표 김규철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79번길 14(301호)	㈜강복건설 대표 서동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7 A동 2108호	

5.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043)730-3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공고 제2019-324호

[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중로3-16호선, 소로2-73호선 중로2-10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제 한 : 모든 건설기계 및 차량, 보행자	구 간	시점: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 종점: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4-5 (현대반점 앞)
			시점: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118 종점: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22-117 (중앙약국 앞)
기 간	2019년 04월 05일 ~ 2019년 05월 31일까지		
이 유 : 금구리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에 따른 공사구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그 밖의 사항 : 통제방법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인도 및 주행차로 일부 부분통제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첨부서류: 위치도 및 전경사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위치도 및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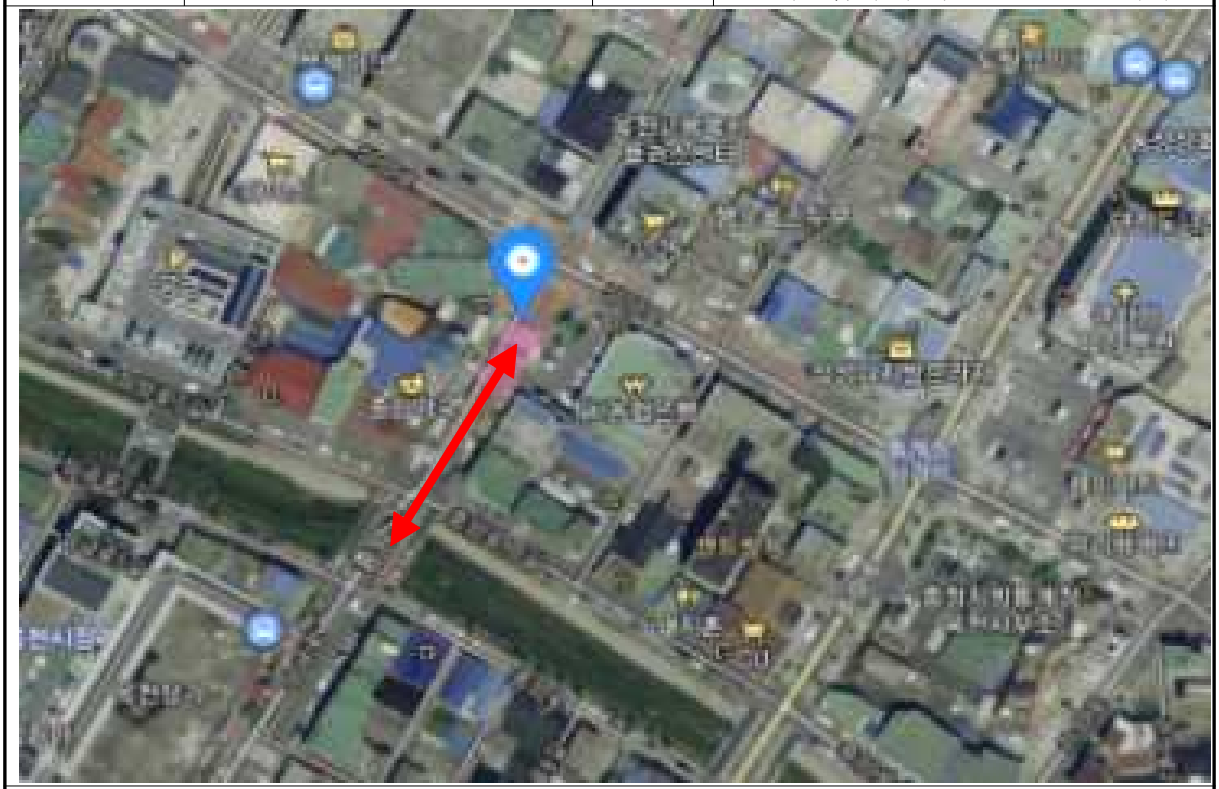
사업명	금구리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위 치	옥천읍 양수리 1 ~ 옥천읍 금구리 234-5 (현대반점 앞)





위치도 및 전경사진

사업명	금구리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위 치	옥천읍 삼양리 222-118 ~ 옥천읍 금구리 222-117(중앙약국앞)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임만재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결과 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제4조)

-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총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3명, 언론인·시민사회대표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구체화(안제6조)**

-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연수 제한사항 신설(안제9조의2)**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연수 제한 가능

○ **사후관리 강화(안제10조)**

- 공무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5.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추 복 성 의원)

발 의 자	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발의년월일	2019. 3. 28.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호 어느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외출장”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외여행하는”을 “국외연수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제2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국외여행”을 “국외연수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행허가)”를 “(연수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의장에게 신청”을 “공무국외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연수자”로, “7인”을 “9명”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위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원”을 “의원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등 3명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언론인·시민사회대표 등 5명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과 연수경비의 적정성

제6조제1항제4호 중 “국외여행과”를 “국외연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3”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

성하여 비치한다”를 “작성 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 및 제안)”을 “(연수계획서 제출 및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20일전”을 “30일전”으로, “여행계획서를”을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여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연수계획을 제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무국외연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연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

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를 “(연수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30일”을 “15일”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의장은 제출 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국외연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연수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연수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연수의 필요성	1 공무국외연수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연수자의 적합성	1. 연수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연수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연수에 포함되었는가?		
	3. 연수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연수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연수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연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연수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연수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연수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연수 신청서(제3조 관련)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6"></td></tr>
<tr><td>공무국외
연수범위</td><td colspan="6"></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6">20 . . ~ . (일간)</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6"></td></tr>
<tr><td>주요활동
내 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6">연 수 자</td><td rowspan="2">소속위원회</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성 별</td><td rowspan="2">연 령</td><td colspan="2">연 수 경 비</td></tr>
<tr><td>금 액(천원)</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국외여비
자부담</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연수을 신청합니다.

20 . . .

연수자(대표) 의원 (인)

옥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연수 심사결과서(제7조 관련)

수　　신 : 옥천군의회 의장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5"></td></tr>
<tr><td>연수동기</td><td colspan="5"></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5"></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5"></td></tr>
<tr><td>주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 수 자</td><td>소속위원회</td><td>성명</td><td>성별</td><td>연령</td><td>연수경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사·의결 결과를 통보 합니다.

붙 임 : 공무국외연수 심사의결서 1부.　끝.

20 년　　월　　일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td></tr>
</table>

공무국외연수 심사 의결서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6"></td></tr>
<tr><td>연수동기
및 배경</td><td colspan="6"></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6"></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연 수 자</td><td rowspan="2">소속위원회</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심사결과</td></tr>
<tr><td>가(可)</td><td>부(不)</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연수계획서(제9조 관련)

1. 연수개요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7"></td></tr>
<tr><td>연수동기
및 내용</td><td colspan="7"></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7">. . . ~ . . .(일간)</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6">연 수 자</td><td rowspan="2">소속</td><td rowspan="2">직급</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연 수 경 비</td></tr>
<tr><td>금 액</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명</td><td></td><td></td><td>천원</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옥천				
		옥천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연수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연수효과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작성요령(제10조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연수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국외연수----------.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옥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국외연수----------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옥천군수가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 국외출장----------
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5. ---------- 국외연수를 하는 ----
<신 설>	6.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에 따라	7. ----------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 국외연수를 --------
제3조(여행허가)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허가) ① 공무국외연수를 ---------- ---------- 공무국외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허가 하여야 한다.	② ---------- 공무국외연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비율이 1/2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공무국외연수자-------- ---------- 9명 --------.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 민간위원 중-------.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
1. 의장이 추천한 의원	1. ---------- 의원 1명
2. 대학교수·주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2.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등 3명
<신 설>	3. 언론인·시민사회대표 등 5명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와 기준)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심사와 기준) ① ---------- 공무국외연수----------.
1. 여행목적과 여행국·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자의 적합성
2. 여행인원수와 여행자 구성의 적합성	2.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과 연수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의 국외여행과 관련한 사항	4. ------ 국외연수와 ------ --
②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② 제1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여행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 공무국외연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3분의 2 이상---------.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팀장이 된다.	④ ---------- 1명----------.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⑦ ---------- 작성 후 옥

비치한다.	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및 제안)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여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연수계획서 제출 및 제안) ① 공무국외연수를 ---------- 30일전----------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 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연수계획을 제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공무국외연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연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 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제10조(연수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연수를 ---------- 15일 ---------- 공무국외연수 ----------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심사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국외연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연수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연수를 ---------- ---------- ---------- ---------- ---.

관 련 자 료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

1. 추진배경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개정내용

1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2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시·도 의회는 9인 이상,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3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4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5 사후관리 강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별지 2)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4. 별도 권고사항

○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심사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임의로 심사대상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삭제 조치

5. 조치사항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적절히 개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개정 현황을 첨부의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6.30.)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8호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곽봉호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

4. 주요골자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제4조)

-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의원이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으면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제4조의2)**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제4조의3)**

-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가족 채용 제한(안제4조의4)**

- 의원은 옥천군의회, 옥천군 및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제4조의5)**

-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제8조의2)**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음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음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제10조의2)**

- 의원은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할 수 없음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안제10조의3)**

- 의원은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안제16조)**

-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6.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이 의 순 의원)

발 의 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발의년월일	2019. 4. 5.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제2조제1호다목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령에 따라 처리”를 “강령을 적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

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단,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

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 및 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 "옥천군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천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를 "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옥천군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

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군 또는 군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사전”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으로, “기관·단체”를 “기관·단체”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를 “분명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별지 제5호”를 각각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초과사례금”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서면으로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을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

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의장”을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을 “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자문할 수 있다”를 “자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대하여”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하면”을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받”을 “제출받”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7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 이상 9인”을 “7명 이상 9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을 “미리 지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안에 관하여”를 “사안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해관계자와”를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하여”를 “대한”으로, “한”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이 되기 전에”를 “위원이”로, “관여한”을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여하거”를 “관여하고 있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를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로, “공정하게”를 “공정하게 업무를”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를 “자문위원회 회의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27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요청하거나 옥천군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 중 “자문”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은 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자문료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목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을 각각 “강령”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고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4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일자</td></tr>
<tr><td rowspan="2">신 고 자</td><td>성 명</td><td></td><td rowspan="2">선거구분</td><td>지 역 구</td><td></td></tr>
<tr><td>소속위원회
(정당)</td><td></td><td>비례대표</td><td></td></tr>
<tr><td rowspan="4">영리행위
현 황</td><td>명 칭</td><td colspan="4"></td></tr>
<tr><td>직 위</td><td></td><td></td><td>영리행위 기간</td><td></td></tr>
<tr><td>보 수</td><td colspan="2">(택) 연 원
월 원</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영리행위 장소
(주소)</td><td colspan="4"></td></tr>
<tr><td>기 타</td><td colspan="5"></td></tr>
</table>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부서(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법인・단체----------.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가. ---------- 법인・단체
나. 옥천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다. ---------- 법인・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 강령을 적용----------.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

	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단,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 및 군의 산하기관(「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옥천군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 의회---------- ----------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옥천군 및「공직자윤리법」제3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 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1. (현행과 같음) 2. ----------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옥천군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

	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신 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군 또는 군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 략)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별지 제5호 ------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 기관·단체 ---------- 분명하게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8호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8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 별지 제10호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신고----------.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 본----------.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③ ---------- 제21조 ----------

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제21조---------- ---------- ---------- 관한 --- ---------- ---------- ----------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 확인한 경우에는 ---------- 제출받---------- ---------- -----.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 별지 제14호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 ---------- 별지 제10호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별지 제15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3. ---------- 별지 제16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	⑥ ---------- 별지 제17호 ----------

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 ---------- ---------- ---------- ---------- ---------- ---------- --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 --- 7명 이상 9명 ---------- ----------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 ----------.
1. 옥천군 소속 공무원	<삭 제>
2. 옥천군의회 의원	<삭 제>
3. 정당의 당원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미리 지명---------- ----------.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자문위원회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사안의 -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3. ---------- 대한 --- ----- 하고 있거나 하였던 -- ----------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 -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 관여하고 있거----------
②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 공정하게 업무를 ---------- 자문위원회 회의를 ----------.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옥천군 의회사무팀장으로 한다.	제2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옥천군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위원회---------- ---------- ---------- 요청할 ---------- ----------.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 자문위원회 ----------.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그 ----------.
제31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 강령 ---------- 강령 ----------.
<신 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

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

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